

중국환경법제의 개관

盧 隆 熙*

목 차

- | | |
|--------------------|--------------------|
| I. 중국 환경법의 발전 | IV. 중국 환경법제상의 기본제도 |
| II. 중국의 환경법체계 | V. 맺음말 |
| III. 중국 환경법제의 기본원칙 | |

I. 중국환경법의 발전

중국환경법제의 역사는 길다. 기원전 16세기에 건국된 商(뒤에 殷으로됨)나라의 도시유적을 보면 동을 제련하거나, 도자기를 굽거나, 술을 만드는 생산시설은 주민의 거주지역과는 떨어지게 배치시킨 도시계획의 흔적을 엿볼 수 있고 13세기의 殷墟에서는 쓰레기나 폐기물을 버리는 坑穴이 많이 발견된 바 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듯 은나라법에는 공도상에 재를 버린자는 손을 자르는 형벌을 과했다(殷之法, 刑棄灰于公道者斷其手)는 기술도 있다.⁽¹⁾ 이와같은 오염방지를 위한 법보다 자연환경을 위한 법은 훨씬 앞서 제정되어 있다. 기원전 21세기경의 夏禹時代에 이미 봄철 석달동안은 나무 자르는 것을 금하고 여름철 석달동안은 고기잡는 것을 금지하는(禹之禁, 春三月山林不登斧, 以成草木之長; 入夏三月川澤不網罟, 以成魚鱉之長)⁽²⁾ 자연자원보호에 관한 법이 있었다 한다. 기원전 11세기에 西周는 伐崇命을 제정하여 집을 파괴하거나 우물을 메우거나 나무를 자르거나 가축(말, 소, 닭, 양, 개, 돼지)을 율기거나 하는 자를 사형에 처했다(毋壞屋, 毋填井, 毋伐樹木, 毋動六畜, 有不如令者, 死无死). 이는 고대중국의 수원 산림 동물들을 보호하는 법이 엄했음을 뜻한다.

周文王은 3천년전에 이미 천연동물원을 만들고 오늘날의 자연보호구와 같은 방법으로 동물을 보호했다는 기록도 있다.⁽³⁾

그러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환경보호법은 <秦律·田律>이다. 1975년 湖北省 雲夢縣에서 출토된 秦墓竹簡에 의하면 진나라시대의 田律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가 규정되어 있었다. 즉 봄철 두달동안은 산에 올라 목재를 벌목하거나, 저수지의 물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여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1) <韓非子·內儲說上>에 기재되어 있다고 함.

(2) <逸周書·大聚篇>에 기재되어 있다고 함.

(3) <孟子·梁惠王下>, <詩經·靈臺>에 기재되어 있다고 함.

름철이 오기 전에 풀을 태워 비료를 만들면 아니되고 싹이 트는 식물을 채취해서도 아니되며 어린짐승, 새알, 어린새 등을 잡거나 주우면 아니되고 물속의 고기나 자라를 독살해서도 아니된다. 그리고 함정을 파거나 그물을 쳐서 새나 짐승을 잡아서도 아니된다. 칠월에 이르러 이 금령은 해제된다는 취지이다. (물론 이 죽간에는 결자가 있어서 해독할 수 없는 곳이 여러 곳 있다.)

7세기에 들어와 중국의 법제는 唐律로 완비된다. 당을가운데 雜律이 바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당률에 근거를 두고 후세의 明나라와 淸나라의 환경법도 정비되어 있다.

여기서 언급해 두어야 할 중요한 것의 하나는 환경법의 사상적기초를 제공한 중국의 사상가들의 역할이다. 孔子, 孟子, 管子, 荀子, 韓非子, 淮南子 등 저명한 사상가들이 자연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생명을 끊거나 성장을 막아서는 아니된다(不夭其生 不絕其成)는 荀子의 사상은 환경보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찍이 자연자원을 亂傷(남벌, 남렵, 남채)시키는 것은 公患이라 하였는데 오늘의 환경법 학자들중에는 이 公患이 바로 公害의 근원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⁴⁾

1949년 공산당의 집권으로 시작된 중화인민공화국의 환경법제의 발전은 대체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북경대학의 金瑞林 교수는 이를 환경법의 발생시기(產生時期)(1949년의 건국후부터 1973년 전국 제 1 차환경보호회의가 소집될 때까지), 환경법의 발전시기(發展時期)(1973년부터 1978년 공산당 11차 三中全會까지), 환경법의 초기완성시기(初步完善時期)(1978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하고 있다.⁽⁵⁾

즉 제 1 단계는 환경오염을 전혀 돌보지 않은 시기(不顧時期)이다. 공업화 5개년계획의 채택, 강철과 식량증산(大辦鋼鐵, 以糧爲綱)을 구호로 내진 大躍進運動, 狂亂年代라고 심판받는 10년동안에 걸친 文化大革命의 추진 등은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몰고 왔으나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서의 환경법제정이 거의 없었다. 다만 자연보호관계법이 몇몇 제정되었을 뿐이다. 헌법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949년에 제정된 임시헌법인 「中華人民共和國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에서는 삼림보호, 연해어장보호, 수리사업, 병충해방지, 위생설비 등과 같은 규정만이 엿보이고, 1954년에 반포된 「中華人民共和國憲法」에서도 중요 자연자원과 환경요소가 全民所有 즉 국가소유임을 밝히는 데 그치고 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생긴 환경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공업선진국의 노력이 계속되는 동안 중국에서도 인구폭발, 도시화 급진전, 농공업의 맹목적 개발등으로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가 진행되어 그 해결을 위한 군중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이리해서 周恩來 총리에 의한 환경대응책이 처음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 계기는 그가 직

(4) 馬驥聰, 蔡守秋, 中國環境法制通論, 學苑出版社, 1990, p. 40.

(5) 金瑞林 主編, 環境法學, 北京大學出版社, 1990, pp. 49-56.

접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던 스톡홀름회의였다. 스톡홀름회의에서 돌아온 周총리는 1973년에 國務院으로 하여금 제 1차 全國環境保護會議를 소집시켜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관한 약간의 규정(시행초안)」을 채택케 하였는데 이것이 곧 중국환경보호기본법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환경보호사업의 방침으로 「전면적으로 계획하며(全面規劃) 합리적으로 배치하며(合理布局), 종합적으로 이용하며(綜合利用), 해로운 것을 이로운 것으로 만들며(化害爲利), 대중에 의거하며(依靠群衆), 모두가 일어나(大家動手) 환경을 보호하여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는것(保護環境, 造福人民)」을 밝히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대로 1979년의 환경보호법(시행) 제 4조로 되었다.

한편 1978년에 개정된 憲法은 제11조에 「국가는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 퇴치한다」는 규정을 두어 환경보호의 헌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四人幫을 중심으로 하는 「반혁명 집단」이 무너짐에 따라 1978년에 소집된 중국공산당 11기 三中全會가 열린 이래 중국의 환경법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우선 환경보호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시행)」이 1979년에 제정되고, 1982년에 개정된 헌법이 환경보호규정을 보장했으며, 각종 환경오염방지관계, 자연환경과 자원의 보호관계 및 환경관리관계 법률이 속속 제정되었다. 이것이 모두 80년대에 이룩한 성과인 것이다. 이리해서 중국의 환경법제는 80년대에 들어와 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II. 중국의 환경법체계

중국의 환경법체계는 (1) 헌법의 환경보호관계규정, (2) 환경보호기본법, (3) 각종 환경보호단행법, (4) 환경기준, (5) 기타부문법 속의 환경보호적 규범, (6) 지방환경보호법규, (7) 국제조약 등으로 구성된다.

1. 헌법의 환경보호관계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82) 제26조는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개선하며 오염 및 기타 공해를 예방퇴치한다. 국가는 식수조립을 조직, 장려하며 임목을 보호한다」고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밝히고 있다. 환경보호를 국가의 기본책무의 하나로 밝힘으로서 환경입법의 헌법적기초를 마련한 규정이다.

그리고 제 9조 제 2항은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보장하며 진귀한 동식물을 보호한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자연자원을 침점(侵佔)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 2항은

「국가는 명승고적, 진귀한 문화재와 그밖의 중요한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한다」고 규정하

고 또한 제10조 제 5 항은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려는 환경보호의 범위가 넓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는 「지하자원, 수역,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개펄 등 자연자원」(헌법 제 9 조 제 1 항)과 「도시의 토지」(헌법 제10조 제 1 항)는 국가소유로 되어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개펄은 집단적소유가 될 수 있고 농촌과 도시교외지구의 토지는 법률이 정한데 따라 국가소유로 되는것 외에는 집단소유이고 터전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소유이다.

이밖에 헌법 제51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국가, 사회, 집체의 이익과 다른 공민의 합법적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주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권리남용을 통한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를 금지시키고 있다.

2. 환경보호기본법

중국의 환경보호기본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73년 국무원이 채택한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관한 약간의 규정(시행초안)」에서 시작하여 1979년에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시행)」을 거쳐 1989년의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으로 정착되었다.

1979년의 환경보호법(시행)은 전 7장 33조로 되어 있는데 그 장별명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총칙(제 1 조~제 9 조)

제 2 장 자연환경의 보호(제10조~제15조)

제 3 장 오염과 기타 공해의 예방퇴치(제16조~제25조)

제 4 장 환경보호기구와 그 직책(제26조~제28조)

제 5 장 과학연구 및 선진교육(제29조~제30조)

제 6 장 장려와 징벌(제31조~제32조)

제 7 장 부칙(제33조)

이 시행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환경보호법을 정식으로 제정해야할 이유는 1982년의 헌법 개정이었다. 시행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1조의 《국가는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퇴치한다》」는데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헌법 제11조는 개정된 헌법 제26조로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시행법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책임을 묻는 전문규정이 없었고, 환경의 질은 누가 책임지며 환경계획은 누가 제정하고 인준하고 실시하며, 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오염과 파피는 어떻게 해결하고 오염이 발생된 후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 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리해서 1983년부터 정식법의 제정에 착수하였다. 국가환경보호행정의 주관부문인 도시농촌건설·환경보호부(城鄉建設環

境保護部)가 주동이 되어 국무원 유관부문, 성 시의 환경보호국 간부, 대학 연구소의 전문가들의 공동노력으로 초안을 작성하여 10여차례의 심의를 거쳐 수정한 후 1986년말에 국무원에 이를 제출하였다. 87년부터 관계부처,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989년 12월 26일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위원 116명중 112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⁶⁾

새로 통과된 환경보호법은 6장 47조로 그 장명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총칙(제 1 조~제 8 조)

제 2 장 환경감독관리(제 9 조~제 15 조)

제 3 장 환경의 보호와 개선(제 16 조~제 23 조)

제 4 장 오염과 기타 공해의 예방퇴치(제 24 조~제 34 조)

제 5 장 법률책임(제 35 조~제 45 조)

제 6 장 부칙(제 46 조~제 47 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목적)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고 오염 기타 공해를 예방 퇴치함으로써 인체건강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제 1 조).

② (환경의 개념) 이 법에서 말하는 환경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천연적 또는 인공개조적 자연인소(自然因素)의 총체를 뜻하고 대기, 물, 해양, 토지, 지하자원, 산림, 초원, 야생생물, 자연유적, 인문유적,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도시와 농촌 등을 포괄한다.

③ (조화발전) 국가가 제정한 환경보호계획은 국민경제계획과 사회발전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국가는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 기술정책과 조치를 채택하여 환경보호와 경제건설 및 사회발전은 상호 조화(協調)되어야 한다(제 4 조).

④ (공민의 권리, 의무) 모든 단위와 개인은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동시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고발(檢舉) 고소(控告)할 권리를 가진다(제 6 조).

⑤ (환경보호관리체제)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전국적 환경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감독관리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의 환경행정주관부문은 관할구역내의 환경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감독 관리한다.

국가해양행정주관부문은 항무감독과 어정어항감독을 하고, 군대환경보호부문과 각급 공안, 교통, 철도, 민항관리부문은 관계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른 오염의 예방퇴치사업의 실시와 감독관리를 한다.

(6) 張坤民, 金瑞林 主編, 環境保護法講話, 清華大學出版社, 1990, p. 10.

현급이상 지방정부의 토지, 지하자원, 임업, 농업, 수리행정주관부문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감독관리한다(제 7 조).

여기서 관계법률이란 海洋環境保護法, 水污染防治法, 大氣污染防治法 등 환경보호 단행법 3개와 토지, 삼림초원, 물, 광산, 어업, 야생동물에 관한 7개 자원법을 가르킨다.

그리고 현급이상 지방정부란 省(22), 自治區(5), 直轄市(3), 自治州(30), 省轄市(170), 自治縣(110), 縣(1,817), 市(208), 市管轄區(632)를 뜻한다. 중국의 행정구획은 전국을 성, 자치구, 직할시로 구분하고, 성과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뉘고, 현과 자치현은 鄉, 民族鄉, 鎮으로 나뉜다. 그리고 직할시와 성할시는 구와 현으로 나뉜다.⁽⁷⁾

⑥ (환경감독관리)

제 2 장 환경감독관리는 신설된 것이다. 시행법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뒤에 제정된 수오염 방지법 등에 규정되었던 것을 신법에 넣음으로써 환경기준 배출기준의 제정권한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가환경기준(國家環境質量標準), 오염물배출기준(汚染物排放標準)을 제정한다. 배출기준은 환경기준과 국가의 경제 기술조건을 감안해야한다(제 9 조 제 1 항, 제10조 제 1 항).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국가의 환경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지방적 보충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그것을 국무원 환경보호부문에 등록한다(제 9 조 제 2 항). 또한 국가의 오염물배출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배출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 기준은 국가의 배출기준보다 더 엄하게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방오염물배출기준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제10조 —제 2 항) 지방의 배출기준이 있는 곳에서의 오염물배출은 지방의 배출기준을 따라야 한다(제10조 제 3 항).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탐지(監測)제도를 마련하여 이에 관한 규정과 유관부문 간의 조직망을 설치하며 환경탐지를 강화해야 한다(제 11조 제 1 항).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정부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환경실태에 관한 공보를 정기적으로 작성 공포해야 한다(제11조 제 2 항).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설항목은 국가가 제정한 건설항목 환경보호관리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건설대상의 환경영향 보고서는 건설대상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오염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야 하고, 방지조치를 정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당 환경보호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의 비준을 받은 후에라야 건설대상의 설계임무서를 비준할 수 있다(제13조).

⑦ (환경의 보호와 개선) 각급 지방정부는 관할구역내의 환경의 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7) 法律出版社刊, 中國法律年鑑 1988, 1989, pp. 531-532. 행정구획이름다음의 괄호속 수자는 단제의 수인데 성에는 내만성이 포함되었으나 대만의 하급행정구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제16조). 이에 는 말단 지방정부인 鄉과 鎮까지 포함된다.

자연자원을 개발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생태환경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9조).

도시계획을 정할 때에는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관한 목표와 임무를 밝혀야 한다(제22조).

⑧ (환경오염과 기타 공해의 예방토치)

생산, 건설,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 폐수, 폐기물, 분진, 악취기체, 방사성물질 및 소음, 진동, 전자파복사 등에 의한 환경의 오염과 위해를 예방토치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취한다(제24조).

중국의 환경보호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기술과 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해 올 수 없다(제30조).

유독성 화학물질과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물품의 생산, 저장, 운송, 판매 사용에는 국가가 정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제33조).

⑨ (법률책임)

시행법은 법률책임에 관한 장이 없었고 제6장 장려와 징벌속의 한 조문(제32조)으로 법률책임을 규정하고 있었다. 폐지된 시행법 제32조는

「이 법과 기타 환경보호 조례, 규정을 어기고 환경을 오염, 파괴하여 인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단위에 대하여는 각급 환경보호기구들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정상에 따라 비판, 경고를 주거나 벌금을 과하며 또는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조업을 중지하고 개선하도록 명한다.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 파괴하여 사상자를 냈거나 농업, 임업, 목축업, 부업, 어업에 중대한 손실을 준 단위의 지도일군, 직접적책임자 또는 기타 공민에 대하여는 행정책임, 경제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세법은 장을 하나 신설하고 그 속의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에 신고등기제도를 지키지 않았거나, 초표배오비(超標排污費)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오염기술과 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하였거나, 오염시설을 이전해 왔거나, 삼동시제도를 집행하지 않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멋대로 가동시키지 않았거나, 오염사고를 냈거나, 개수명령기일을 어겼거나하는 따위의 9가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다. 환경보호기구가 내리는 행정처벌에는 경고, 벌금, 정지나 개수를 명하는 책령(責令) 등이 있다.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는 행정처벌을 받은 당사자가 불복인 경우의 소송절차, 손해배상, 소송시효(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는 2년이나 환경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3년으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환경보호 감독관리업의 직권남용, 직무유기(玩忽職守), 사사로운

정리에 따른 부정행위(徇私舞弊)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⑩ (부칙)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제46조)과 시행법의 폐지(제47조)를 규정하고 있다.

(3) 각종 환경보호 단행법

앞서 본바와 같이 중국의 환경법제는 80년대에 들어와서 정비되었다. 이제 이를 오염방지, 자연환경과 자원보호, 환경관리, 토지이용의 분야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오염방지 관계 법규

- ① 中華人民共和國海洋環境保護法(1982)
- ② 中華人民共和國防止船舶污染海域管理條例(1983)
- ③ 中華人民共和國海洋石油勘探開發環境保護管理條例(1983)
- ④ 中華人民共和國水污染防治法(1984)
- ⑤ 中華人民共和國海洋傾廢管理條例(1985)
- ⑥ 關於結合技術改造防治工業污染的幾項規定(1983)
- ⑦ 關於加強防塵防毒工作的決定(1984)
- ⑧ 關於防治煤煙型污染技術政策的規定(1984)
- ⑨ 農藥登記規定(1982)
- ⑩ 中華人民共和國大氣污染防治法(1987)
- ⑪ 中華人民共和國環境噪聲污染防治條例(1989)

2) 자연환경과 자원보호관계 법규

- ① 水產資源繁殖保護條例(1981)
- ② 水土保持工作條例(1982)
- ③ 關於嚴格保護珍貴稀有野生動物的通令(1983)
- ④ 中華人民共和國森林法(1984)
- ⑤ 中華人民共和國草原法(1985)
- ⑥ 中華人民共和國漁業法(1986)
- ⑦ 中華人民共和國鑛產資源法(1986)
- ⑧ 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1986)
- ⑨ 中華人民共和國水法(1988)
- ⑩ 中華人民共和國野生動物保護法(1989)

3) 환경관리관계 법규

- ① 建設項目環境保護管理辦法(1986)
- ② 征收排污費暫行辦法(1982)
- ③ 全國環境監測管理條例(1983)

- ④ 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標準管理辦法(1983)
- ⑤ 國務院關於加強御鎮, 街道企業環境管理的規定(1984)
- ⑥ 關於開發資源綜合利用若干問題的暫行規定(1985)
- ⑦ 對外經濟開放地區環境管理暫行規定(1986)

4) 토지이용관계 법규

- ① 中華人民共和國城市規劃法(1989)
- ② 村鎮建房用地管理條例(1982)
- ③ 村鎮規劃原則(試行)(1982)

이상의 법규중 몇개만 골라 그 장별내용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해양환경보호법⁽⁸⁾은 8장 4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장명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총칙(제 1 조~제 5 조)

제 2 장 해안시설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손해의 방지(제 6 조~제 9 조)

제 3 장 해양석유탐사개발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손해의 방지(제 10 조~제 17 조)

제 4 장 육상원오염물질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손해의 방지(제 18 조~제 25 조)

제 5 장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손해의 방지(제 26 조~제 37 조)

제 6 장 폐기물의 투기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손해의 방지(제 38 조~제 39 조)

제 7 장 법적책임(제 41 조~제 44 조)

제 8 장 부칙(제 45 조~제 48 조)

수질오염방지법⁽⁹⁾은 7장 4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장명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총칙(제 1 조~제 5 조)

제 2 장 수질환경기준과 오염물배출기준의 제정(제 6 조~제 8 조)

제 3 장 수질오염방지에 대한 감독관리(제 9 조~제 18 조)

제 4 장 지표수의 오염방지(제 19 조~제 31 조)

제 5 장 지하수의 오염방지(제 32 조~제 36 조)

제 6 장 법적책임(제 37 조~제 43 조)

제 7 장 부칙(제 44 조~제 46 조)

중화인민공화국 산림법⁽¹⁰⁾은 전 7장 4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장명은 아래와 같다.

제 1 장 총칙(제 1 조~제 10 조)

(8) (1982년 8월 23일 제 5 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 24차회의에서 채택, 1982년 8월 2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명령 제 9 호로 공포,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
 (9) (1984년 5월 11일 제 6 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 5 차회의에서 채택, 1984년 5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제 12호로 공포, 1984년 11월 1일부터 시행)
 (10) (1984년 9월 20일 제 6 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회의에서 채택, 1984년 9월 20 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제 17호로 공포,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 2 장 삼림의 경영관리 (제 11조~제 15조)

제 3 장 삼림보호 (제 16조~제 21조)

제 4 장 식수조림 (제 22조~제 24조)

제 5 장 삼림의 채벌 (제 25조~제 33조)

제 6 장 법적책임 (제 34조~제 39조)

제 7 장 부칙 (제 40조~제 42조)

중화인민공화국도시계획법⁽¹¹⁾은 전 6장 4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장명은 아래와 같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제 10조)

제 2 장 도시계획의 제정 (제 11조~제 22조)

제 3 장 도시의 신규개발과 구구재개발 (제 23조~제 27조)

제 4 장 도시계획의 실시 (제 28조~제 38조)

제 5 장 법률책임 (제 39조~제 43조)

제 6 장 부칙 (제 44조~제 46조)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방지법⁽¹²⁾은 전 6장 41조로 구성되는데 그 장명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제 8 조)

제 2 장 대기오염방지의 감독관리 (제 9 조~제 16조)

제 3 장 연진오염방지 (제 17조~제 21조)

제 4 장 폐기, 분진, 및 악취오염 (제 22조~제 30조)

제 5 장 법률책임 (제 31조~제 39조)

제 6 장 부칙 (제 40조~제 41조)

4. 환경기준

환경기준이란 국가가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오염을 통제함으로써 인체의 건강과 사회제화 및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각종 기술지표와 행동규범의 총칭을 말한다.⁽¹³⁾ 이 환경기준은 규범성을 지니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규제정절차와 동일하게 결정됨으로 환경법 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된다. 환경기준은 각종 환경법과 맞물려서 국가의 환경관리에 커다란 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기준은 환경법과 때를 같이하여 발달해 왔다. 그 내력을 보면 처음에는 공장지대나 대도시같이 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요오염물질의 배출기준으로 오염방지법속에 규정되었으나 공해현상이 전국화되면서 환경법이 보강되고 환경기준도 전국적기준으로 발전되었다. 환경기준은 대체로 3가지로 분류할

(11) (城市規劃法) (1989년 12월 26일 제 7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 11차회의에서 채택, 1989년 12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제 23호 공포,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

(12) (1987년 9월 5일 제 6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 22차회의에서 채택, 1987년 9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제 57호 공포,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

(13) 金瑞林 主編, 環境法學, 北京大學出版社, 1990, p. 70.

수 있다. 환경의 질기준, 오염물배출기준, 기초기준과 방법기준이 그것이다.

1) 환경의 질기준

환경의 질기준은 50년대초에 공업집중지역에서 제기되는 국부적 환경오염을 규제함으로써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工業企業設計暫行衛生基準⁽¹⁴⁾이 그 예로서 주거지역내의 대기중 12종의 유해물질의 최고허용농도를 규정하고 있다.

1959년의 生活飲用衛生規定(1976년에 生活飲用水衛生基準으로 개정됨)은 감관성지표, 화학지표, 독리학적지표 등 23개항의 지표를 규정하고 있다. 70년대 이후 환경의 질기준은 계속 마련되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大氣環境量基準(1982)
- 漁業水質基準(1979)
- 海水水質基準(1982)
- 地面水環境質量基準(1983)
- 農田灌溉飲質基準(1985)
- 生活衛用水衛生基準(1985年 改正)
- 城市區域環境噪聲基準(1982)
- 工業企業噪聲衛生基準(1979)
- 放射防護規定(1974)
- 微波輻射暫行衛生基準(1979)
- 核發電所環境輻射防護規定(1986)

2) 오염물배출기준

오염물배출기준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규제함으로써 인체의 건강과 생태계의 순환질서를 유지시키고 이로서 환경의 질기준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장설비와 기술수준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국가배출기준으로 처음 제정된 것은 1973년의 工業“三廢”排出試行基準이다. 이것은 공업활동에서 나오는 폐기, 폐수, 폐사(廢渣)를 각기 허용농도와 수량을 정한 규정이다.

배출기준은 크게 제조과정과 사용과정의 두가지 측면에 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미 제정된 양 유형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제조과정상의 배출기준

- 製紙工業水污染物排出基準(1983)
- 甜菜(사탕무)製糖工業水污染物排出基準(1983)
- 合成洗滌劑工業污染物排出基準(1983)
- 製菓工業水污染物排出基準(1983)

(14) (1956, 1962년에 工業企業設計衛生基準으로 개정됨)

紡織印染工業水污染物排出基準(1984)

鐵鋼工業污染物排出基準(1985)

水泥(시멘트)工業污染物排出基準(1985)

② 사용과정상의 배출기준

鍋爐(보일러)煙塵排出基準(1983)

船舶污染物排出基準(1983)

汽車(자동차)柴油機(디젤기관)全負荷煙度排出基準(1983)

農藥安全使用基準(1984)

3) 기초기준과 방법기준

기초기준과 방법기준이란 환경질기준이나 오염물배출기준이 그 종류에 있어서 잡다하고 기술문제에 있어서 복잡한 까닭에 통일된 원칙,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기초기준이란 환경기준의 원칙, 지침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사 술어 부호 등을 규정한 것이고 방법기준이란 전국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시험 감측 분석 샘플 통계 등 각종방법을 통일시키는 규정이다. 국제표준화조직(ISO)의 환경기술위원회가 지난 10여 년동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중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制定地方水污染物排出基準的(의)技術原則與(과)方法, 制訂地方大氣污染物排出基準的(의)技術原則與方法, 汽油(휘발유)車怠速污染物測量方法, 柴油車自由加速煙度測量方法, 汚車排氣測定方法, 鍋爐煙塵測試方法, 浮遊粉塵濃度測定方法 등이 그것이다.

5. 기타법속의 환경보호규정

전문환경법 이외에 민법, 형법, 경제법 등에도 환경보호관계 법률규범이 규정되어 있다.

1)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속의 유관규정

상린관계에 있어서 민사책임을 저야하는 조건중에 배수, 통행, 통풍, 채광과 같은 환경보호적 규정이 있고(제83조), 생명건강권을 규정한 제98조는 환경을 오염시켜 타인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민사적 침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공, 고압, 가연, 가폭, 극독, 방사성, 고속운송수단 등 주위환경에 고도의 위험을 주는 작업을 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제123조), 국가가 제정한 환경보호 또는 오염방지규정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제124조) 민사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2) 「中華人民共和國刑法」속의 유관규정

「공장, 광산, 임장(林場), 건축기업소 또는 기타 기업사업단위의 종업원으로서 복무관리규정에 따르지 않고 규칙제도를 위반하였으므로 하여 또는 규칙제도를 위반하는 위험한 작업을 행하도록 노동자를 강요하였으므로 하여 중대한 사상사고를 발생시켜 중대한 후과(後果)를 초래한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한다.」(제114조)

「폭발성, 가연성, 방사성, 유독성, 부식성 물품의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생산, 저장, 수송, 사용중에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중대한 후과를 초래한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제115조)

삼림보호법규 위반죄(제128조), 수산자원보호법규 위반죄(제129조), 수렵법규 위반죄(제130조)에는 3년 혹은 2년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가짜약의 제조, 판매죄(제164조), 문화재 밀반출죄(제173조), 문화재 명승고적 파괴죄(제174조), 검역법죄(제178조), 국가공무원의 직무태만죄(제187조) 등이 있다.

3) 「中華人民共和國治安管理處罰條例」속의 유관규정

위험물품관리규정을 위반해서 이를 생산 저장, 수송, 사용하였으나 아직 후과가 없는 경우 15일 이하의 구류나 200원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를 하고(제20조 제 2 항), 명승고적 오손행위, 잔디밭, 화단, 수목을 어지럽히거나 꺾는 행위, 음향기재의 소음행위 등(제25조)에 대해서도 행정벌을 규정하고 있다.

4) 경제법중의 유관규정

각종 경제법중 계획법, 공업기업법, 농업법, 교통운수법, 섭의경제법, 기본건설법 등에 환경보호관계 규정이 들어있다.

「中華人民共和國全民所有制工業企業法」(1988) 제41조, 「中華人民共和國對外合作開採海洋石油資源條例」(1982) 제24조,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1983) 제 5 조 등이 그 예이다.

6. 지방환경 보호법

지방정부가 만드는 환경법규와 규장은 환경법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환경문제란 각 지역의 자연조건과 사회조건에 크게 영향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해서 성, 자치구, 직할시와 성, 자치구정부소재지인 시와 국무원이 인정한 대도시는 각 관할구역에서 실시할 환경법규와 규장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입법체제상 상위법규나 규장에 저촉될 수 없다. 지방정부가 만든 환경보호법규에 관한 자료가 없어 자세한 서술을 할 도리가 없으나 1987년말 현재 성급환경법규의 수는 130종에 이른다 한다.⁽¹⁵⁾

7. 국제조약

중국은 1972년의 스톡홀름회의에서 채택한 인간환경선언과 1982년의 나이로비회의(인간환경 10주년기념회의)에서 채택한 나이로비선언의 기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 양대환경선언속에 담겨진 정책방향을 환경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다.

그리고 세계문화와 자연유산보호조약(1972), 와싱턴조약(절멸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 중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 1973), 해양오염방지조약(1973), 덩핑조약(폐기물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의 방지에 관한 조약; 1972), 유탁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조

(15) 中國法律年鑑 -1989-, 法律出版社, 1989, p. 45.

약(1969), 오존층 보호조약(1989), 후조의 보호와 서식환경에 관한 중일협정(1981) 등을 체결 또는 가입하여 이를 국내법(환경보호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물투기관리조례,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관리조례 등)에 반영시키고 있다.

Ⅲ. 중국환경법제의 기본원칙

1. 삼동보 삼효익의 원칙

三同步 三效益의 원칙은 三同步 三統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경제건설, 도시농촌(城鄉)건설, 환경건설은 나란히 동시에 계획(同步規劃)되고 동시에 실시(同步實施)되며, 동시에 발전(同步發展)되어 경제효익(經濟效益), 사회효익(社會效益), 환경효익(環境效益)이 통일되게 나타나야 한다는 원칙 즉 환경과 경제사회의 조화발전의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환경보호법 제 4조에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은 환경보호사업과의 조화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예방위주 방치결합의 원칙

오염시키고 난 뒤에 다스리는(先汚染後治理)것이 아니라 미연에 오염을 방지(防患于未然)하고 예방과 퇴치방안을 동시에 진행시킨다는 원칙이다.

환경보호법은 「국가는 환경보호계획을 제정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서 이를 채택토록하고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정책이나 기술정책을 택해야 한다(제 4 전단)」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화조항인 동시에 예방위주의 환경원칙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 예방위주 원칙은 토지이용계획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로 반영되고 삼동시제도를 통해 방치결합원칙을 밝히고 있다.

3. 종합이용장려의 원칙

綜合利用, 化害爲利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이 원칙은 환경보호법 제25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공업기업을 새로 건설하거나 현존하는 공업기업이 기술개조를 할 때에는 자원이용률을 높이고 오염물배출량이 적은 설비와 공정을 채택해야 하고 합리적으로 폐기물을 종합이용하는 기술과 오염물처리기술을 채택해야 한다.」

4. 개발자양호, 오염자처리의 원칙

誰污染誰治理, 誰開發誰保護의 原則이라고도 하는 이 원칙은 오염원인자가 오염을 퇴치해야하며 개발자가 파괴된 환경의 회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른바 오염자부담의 원칙이다.

환경보호법 제24조, 제28조는 오염원인자가 오염을 퇴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그리고 제19조, 제17조, 제20조는 자연자원을 개발이용한 자가 그 보호를 책임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환경보호의 민주원칙

환경보호법 제 6 조는 「모든 단위나 개인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단위나 개인을 고발고소(檢舉和控告)할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여 민주원칙을 밝히고 있다. 중국헌법에는 環境權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헌법 제 26 조(환경보호의 국가의무규정), 환경보호법 제 1 조(인체건강보호를 위한다는 법의 목적) 그리고 고발고소권을 인정한 제 6 조, 등을 민법통칙 제 83 조(부동산 상린관계에서 통풍권 채광권인정) 등을 들어 환경권이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¹⁶⁾

따라서 환경보호사업은 국민에 의한다는 원칙아래서 추진된다. 전체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지지 및 감독아래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환경보호는 각자의 책임이라는 사상(環境保護 人人有責的思想)을 널리 국민에게 홍보하고, 환경보호교육과 환경과학지식을 보급시키며(환경보호법 제 4 조) 각종 환경보호 민간조직을 활용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聽證會) 등을 열도록 하고 있다.

IV. 중국환경법제상의 기본제도

환경법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법제상 채택된 기본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계획제도

환경보호의 예방위주원칙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일이다. 어떠한 건설이나 개발도 토지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86년은 중국에 있어서 토지이용에 관한 획기적인 해였다. 이해에 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이 개정되고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전국 토지관리를 전담하는 國家土地管理局이 신설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국의 토지관리는 분산다두관리(分散多頭管理)에서 집중통일관리로, 행정수단관리에서 행정 경계 법률수단이 결합된 종합관리로 그리고 용지정발관리(征拔用地管理)에서 토지를 보호 이용 개발 정리하는 전면관리로 뒤바뀌게 되었다.⁽¹⁷⁾

한편 도시토지는 도시계획법(中華人民共和國城市規劃法)에 의해 그 토지이용이 규제되고, 농촌토지이용은 1982년의 국가건설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발표한 농촌소도시계획원칙(村鎮規劃原則), 그리고 국무원이 발표한 농촌소도시주택건설용지관리조례(村鎮建房用地管理條例)⁽¹⁸⁾로 규제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계획적개발은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16) 金瑞林, 前掲書, p.113., 張·金, 前掲書, p.47.

(17) 前掲 中國法律年鑑 p.71.

(18) 土地管理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

2. 환경영향평가제도

1979년의 시행법은 제 6 조와 제 7 조에서 다음과 같이 이 제도를 도입규정하고 있었다.

「모든 기업사업단위의 기지선정, 설계, 건설, 생산에 있어서는 환경의 오염과 파괴를 방지하는데 충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신설 및 재건, 확장공사를 벌릴 때에는 환경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보호부문과 기타 관계부문이 심사비준한 다음에야 설계할 수 있다.」(제 6 조)

「구도시의 개조와 신도시의 건설에 있어서는 기상, 지리, 수문, 상태 등 조건에 의하여 공업구, 주민구, 공공시설, 녹화지대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며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토치함으로써 현대화된 깨끗한 도시를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제 7 조)

1989년의 환경보호법은 모든 건설항목은 반드시 환경영향보고서를 마련해야 하고 관계기관에 의한 환경평가보고서가 비준된 뒤에야 건설항목설계업무가 비준된다고 규정하고(제13조) 환경영향보고서에서 제시한 오염방지시설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만 건설항목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으며(제26조) 환경영향보고서를 비준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을 보고서가 제시한 오염방지시설을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미달인채 조업을 한 때 이를 정지시키고 처벌할 수 있다(제36조)고 규정하고 있다.

1986년에 마련한 建設項目環境保護管理辦法(1981년의 기본건설항목환경보호관리판법이 개정된 것)이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담아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항목개관

- ① 건설항목의 명칭, 지점, 건설성질, 건설규모
- ② 제품의 설계도와 주요공정
- ③ 주요 원료, 연료, 물의 용량과 그 수원
- ④ 폐수, 폐기, 폐사, 분진, 방사성폐기물 등의 배출량과 배출방식. 소음 진동수치
- ⑤ 폐기물회수이용, 종합이용과 오염물처리방법과 그 시설 및 주요공정
- ⑥ 종업원 수와 생활구배치
- ⑦ 점유면적과 토지이용상황
- ⑧ 발전계획

2) 건설항목의 주위환경개관

- ① 지리적 위치(평면도 첨부)
- ② 지형, 지모, 토양과 지질상황, 강, 하, 호, 해, 저수지의 수문상황, 기상상황
- ③ 지하자원, 삼림, 초원, 수산과 야생동식물, 농작물 등의 상황
- ④ 자연보호구, 풍경유람구, 명승고적, 온천, 요양구 및 중요정치문화시설의 상황
- ⑤ 현존하는 공업 광업등 기업분포상황

- ⑥ 생활거주지의 분포상황과 인구밀도, 건강상황, 지방병 등 상황
- ⑦ 대기, 지표수, 지하수의 환경의 질의 상황
- ⑧ 교통운수 상황
- ⑨ 기타 사회, 경제활동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현황자료
- 3) 건설항목이 주위지구환경에 미치는 단기적·장기적 영향분석과 예측
 - ① 주위지구의 지질, 수문, 기상에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축소와 영향감소를 위한 조치
 - ② 주위지구 자연자원에 미칠 영향과 그 범위축소와 영향감소를 위한 조치
 - ③ 주위지구의 자연보호구, 풍경유람구, 명승고적, 요양구 등에 미칠 영향과 그 범위축소와 영향감소를 위한 조치
 - ④ 각종 오염물의 최종배출량이 주위의 대기 물 토양환경의 질과 주민생활구에 미칠 영향의 범위와 정도
 - ⑤ 소음, 진동, 전자파 등이 주위의 생활거주지에 미칠 영향의 정도와 방지조치
 - ⑥ 녹화조치(방호지대적 방호림과 건설구역적녹화 포함)
 - ⑦ 환경조치의 투자액 추정
- 4) 환경감측제도에 대한 건의(감측지점의 배치원칙, 감측기구, 인원, 설비, 감측항목 포함)
 - 5) 환경영향의 경제적 손익분석
 - 6) 결론(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 건물규모 성질 입지의 합리성여부, 환경요구에 대한 부합여부, 방치오염조치의 기술적가능성, 경제적 합리성 등을 논술)

한편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보고서(환경영향보고표)가 필요한 건설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환경영향보고서가 필요한 건설항목
 - ① 대형 중형의 공업건설항목 전부
 - ② 대형 중형의 수리사업, 광산, 항구, 철도, 도로건설항목 전부
 - ③ 대단위 개간사업
 - ④ 희귀야생동식물 멸종위기를 주는 대형 중형의 건설항목
 - ⑤ 자연보호구와 과학적가치가 있는 특수지질 지모지구에서의 건설항목
 - ⑥ 현급이상의 환경보호부문이 환경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 소형 건설항목(향진, 가도, 개체생산경영자의 건설항목 포함)
 - 2) 환경영향보고표작성이 필요한 건설항목
 - ① 소형 기본건설항목과 일정투자기준액이하의 기술개조항목(향진, 가도, 개체생산경영자의 건설항목 포함)
 - ② 성급환경보호부문의 결정으로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된 대형 중형 건설항목과

일정투자기준액 이상의 기술개조항목.

이로서 공업, 교통, 수리, 농림, 상업, 위생, 문교, 과학연구, 여가, 도시행정 등의 기본건설항목과 기술개조항목 및 구역개발항목은 모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 환경정책의 예방위주원칙을 밝히고 있다.

3. 삼동시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결합해서 쓰여지고 있는 삼동시제도는 중국 특유의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건설항목과 기술개조항목에 오염과 기타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고 지적된 경우 그 방지시설은 본체공정과 동시에 설계(同時設計)하고 동시에 시공(同時施工)하며 동시에 조업(同時投産)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72년이래 각종 보고서속에서 제안된 이 제도는 1979년의 시행법에 정식으로 법제화 되었다.

「오염과 기타 공해의 방지를 위한 시설은 본체공사와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고 동시에 조업을 개시하여야 한다」(제 6 조).

현행환경보호법은 제26조에

「건설항목중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은 반드시 본체공사와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고 동시에 조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6조에서 삼동시제도의 위반에 대한 법률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87년의 「건설항목환경보호관리판법」과 「건설항목환경보호설계규정」속에 이 제도의 범위, 내용, 책임 및 보증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4. 오염배출비 징수제도

1979년의 시행법 제18조 제 3 항의 「국가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경우에는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오염배출비를 징수한다」는 규정과 1982년의 「오염배출비징수감행판법」(오염배출비제도의 목적, 원칙, 징수기관, 증감액조건, 배출비의 용도와 감독 등을 규정)으로 확정된 제도다. 1984년의 「수오염방지법」 제15조도 이 제도를 다음과 같이 도입하고 있다. 「기업사업단위가 수체에 오염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국가가 정한 데 따라 오염배출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이 정한 오염배출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가 정한 데 따라 오염배출기준 초과비를 납부하며 책임지고 그것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1989년의 환경보호법은 제28조에 「국가나 지방이 규정한 오염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사업 단위는 국가가 정한데 따라 오염배출기준 초과비를 납부하며 책임지고 그것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티베트 자치구들 제외한 29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1979년부터 1986년까지의 징수액은 46억 2천 3백만원에 이르고 1986년에 징수된 12억원중

그 77%가 사용되었는데 사용액 9억 2천만원의 76%인 7억원이 오염원의 방제대책비로 이용되었다 한다.⁽¹⁹⁾

5. 삼폐종합 이용장려제도

말스는 「자본론」속에서 폐기물, 자연자원, 원재료의 종합이용을 강조한바 있다.²⁰⁾ 廢와 寶, 害와 利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까닭에 일정한 조건아래서는 폐기물이 자원으로 될 수 있고 유해로운 것이 유리한 것으로 될 수 있음으로 폐기물은 종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이용을 밝힌 것이 앞서 본 1979년의 시행법 제 4조와 1989년의 환경보호법 제25조 규정이다. 그리고 1985년의 「개발자원종합이용의 문제점에 관한 임시규정」속에 이 제도가 구체화되어 있다.

그리고 종합이용에 크게 기여한 단위나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종합이용을 통한 생산품에는 각종 우수조치를 택하고 있다.

1962년부터 1980년까지의 18년 동안 회수된 폐기물은 1억 2천만톤이었으나 그 값어치는 246억원에 이르고 六五기간(1981~1985)중 삼폐를 종합이용한 생산품은 86억 8천만원에 이르렀다고 한다.⁽²¹⁾

V. 맺 는 말

중국의 국토면적은 960만km²로서 소련과 캐나다에 이어 세계 제 3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인구는 11억 6천으로 세계 최대국가이다. 육지의 국경선은 2만여 킬로로 동쪽에는 우리 한반도와 접하고 있고 해안선은 전장 1만 8천여 킬로에 이르는데 그 동부는 발해와 황해를 끼고 우리나라와 접해 있다. 이런 지정학적인 이유로 중국대륙의 환경문제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개방지구의 설정을 통한 발해 황해연안의 공업화정책은⁽²²⁾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환경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자본의 중국진출에 있어서도 중국의 환경정책은 알아두어야 할 첫번째 관문임이 틀림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된 특색의 하나로 환경현황에 대한 부정적 통계수치는 국가비밀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 별로 소개된 바 없다.

1991년 2월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15일동안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 곳 서점

(19) 前掲 中國法律年鑑 p. 76.

(20) 「馬克思恩格斯全集」 제25권 p. 118: 馬·蔡, 前掲書, p. 71에서 再引用.

(21) 金瑞林, 前掲書 p. 104.

(22) 헌법 제18조 제 2항은 “중국경내에 있는 외국기업 기타 경제조직과 중의합작경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경제개방지구의 환경문제에 관한 법은 중국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對外經濟開放地區環境管理暫行規定」(1986)이 정해져 있고 소재지 지방정부가 마련한 규정이 있어서 지역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深圳市環境保護管理暫行條例」(1982), 「廈門市環境保護管理規定」(1985) 등이 그것이다.

에서 구입해 온 10여권의 환경법관계서적을 통해 얻은 정보를 체계있게 정리하지 못한채 기술한 것이 본문이다. 한문에 대한 실력이 부족한 필자에게는 이 정도의 정리에도 무진애를 썼다. 특히 중국약자(簡體字)가 주는 고통은 표의문자로서의 한자가 지닌 특징을 빼앗아간 결과라고 하겠다. 여러달의 진통끝에 독학으로 지득할 수 있었던 정보만을 일단 이곳에 게재하는 뜻은 후학의 관심을 끌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좀더 깊은 내용을 알아서 체계화시킬 의무가 필자에게 있음을 스스로 마음먹게 하려는 소치이기도 하다. 이를 약속하면서 난삽한 글을 활자화하는 우행에 대한 용서를 바라는 것에 대할까 한다.

참 고 문 헌

- 韓德培 主編, 環境保護法教程, 法律出版社, 1986.
- 曲格平, 中國環境問題及對策, 中國環境科學出版社, 1988. (第三版)
- 曲格平, 中國的環境管理, 中國環境科學出版社, 1989.
- 張坤民, 金瑞林 主編, 環境保護法講話, 清華大學出版社, 1990.
- 馬驥聰, 蔡守秋, 中國環境法制通論, 學苑出版社, 1990.
- 金瑞林 主編, 環境法學, 北京大學出版社, 1990.
- 國務院法制局編, 中華人民共和國法規匯編(1989年 1月~12月), 中國法制出版社, 1990.
- 中國法律年鑑—1988—, 法律出版社, 1989.
- 齊雯編 中國概況, 外文出版社, 1987.
- 內蒙古自治區域鄉建設環境保護廳編著, 內蒙古自然保護綱要, 內蒙古人民出版社, 1988.